# 로타리재단 후원 프로젝트 표지 제작 가이드라인

로타리재단 보조금 수령자들은 적합한 프로젝트 표지(간판, 플래카드 등)를 제작하여야 한다. 프로젝트 표지 샘플은 3페이지를 참조한다. 이에 추가로, 보조금 수령자는 아래에 (그리고 로타리재단 정책규약 4.090항에) 명시된 로타리 마크 사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090 스폰서 및 협력 단체의 로타리 마크 사용에 관한 RI 및 TRF 가이드라인

1. 국제로타리(이하 “RI”) (또는 로타리재단(이하 “TRF”))[해당되지 않는 것 삭제]은/는 [스폰서 혹은 협력 단체 명칭](이하 “스폰서”)이/가 아래 정의된 “로타리 마크”를 본 조항에 허용된 제한적 용도에 한해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음을 승인한다.
2. 스폰서는 “로타리,” 로타리 로고, “국제로타리,” “RI,” “로타리클럽,” “The Rotarian,” “로타리재단,” 로타리재단 로고, “로타리안,” “로타랙트,” “로타랙트클럽,” 로타랙트 로고, “인터랙트,” “인터랙트클럽,” 인터랙트 로고, “인터랙티브,” “폴 해리스 펠로우,” 폴 해리스의 초상, “폴리오플러스,” 폴리오플러스 로고, 국제대회 로고, 회장 표어 로고, “초아의 봉사,” “가장 훌륭히 봉사하는 자가 가장 많이 얻는다,” 로타리 평화 센터 로고(총칭 “로타리 마크”)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상표와 서비스표의 소유권을 RI가 갖고 있음을 인정한다.
3. 본 조항에 허용된 제한적 용도 중 어느 것도 RI가 스폰서에게 로타리 마크에 대한 라이센스나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4. 스폰서는 표창 자료를 RI가 승인한 회합이나 RI/TRF 행사 장소에, 또는 스폰서십, 파트너십, 협력 관계 등으로 인해 다른 방식으로 공개 전시하는 경우 전시 위치에 대한 통제권을 RI (혹은 TRF)가 보유함을 인정한다.
5. 스폰서는 로타리 마크를 사용한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출판물 혹은 기타 매체를 사전 승인할 권한과, 매체를 막론하고 스폰서 혹은 파트너십과 연계된 자료에 대한 로타리 마크의 모든 사용을 승인할 권한을RI (혹은 TRF)가 가짐을 인정한다. 이러한 사용에는 홍보 및 판촉의 목적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나아가 스폰서는 본 조항에 언급된 로타리 마크의 각 사용은 로타리 혹은 로타리 법률 부서에 의해 출판 전 검토 및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됨을 인식한다. RI는 이와 같은 사용을 개별적으로 거부 혹은 승인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과, 기존 사용 변경(카피 혹은 레이아웃)의 경우 당사자간의 상호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갖는다.
6. 스폰서는 스폰서하는 로타리 행사 또는 프로젝트와 직접 관련된 광고 혹은 홍보 자료에 사용된 스폰서측 로고의 크기가 로타리 로고(혹은 기타 로타리 마크)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작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단, 로타리 로고 혹은 기타 로타리 마크가 반복되는 배경 스크린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RI는 로타리 로고 혹은 로타리 마크가 다른 방식으로 부분적으로 가려지거나 차단되지 않는 한 로타리 로고 혹은 기타 로타리 마크 위에 글씨를 겹쳐 쓰는 것(워터마크, 인쇄,

스크린, 돋을새김 등)을 허용한다. RI는 스폰서가 여타 자체적인 광고에서 로타리 행사 혹은 프로젝트에 대한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강조하고자 하는 경우 로타리 로고가 스폰서측 로고보다 작아도 무방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7. 스폰서들은 위의 6번에 명시된 규정의 개정 없이는 로타리 마크를 변형, 수정하거나 가릴 수 없으며, 항상 완전한 형태로 복제하여야 한다. 디지털 매체에 대한 고려와 로타리 로고의 정확한 복제를 위해, 로타리 휘장이 1.27 cm(0.5 인치) 이하의 크기로 복제될 때에는 특별히 간소화된 버전이 사용될 수 있다. 단, 이 간소화된 휘장은 "디지털 및 작은 공간을 위한 시그니처 록업"의 일부로 "Rotary"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스폰서측 로고와 로타리 로고 혹은 기타 로타리 마크는 겹쳐져서는 안 된다. 두 이미지는 각각의 모양이 확실히 구별될 수 있도록 적당한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야 한다.

8. 로타리 마크는 단색으로 복제될 수 있다. 2가지 이상의 색상으로 복제하는 경우 로타리 로고 및 TRF 로고는 반드시 공식 색상인 로열블루와 골드(PMS 286 Blue와 PMS 871 Metallic Gold 또는 PMS 129U/130C Yellow)로 표현되어야 한다. 기타 로타리 마크에 관한 정보는 필요에 따라 제공된다.

9. 스폰서는 RI의 승인을 얻은 업체만이 로타리 마크를 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한다. 가능한 한 로타리 마크는 RI 공식 인가업체를 통해서만 복제되어야 한다. 공식 인가업체를 통해 원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없는 경우, RI 라이센싱 부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 주류업체와 연계된 물품을 제조할 경우, 주류 제품의 라벨에 로타리 로고를 포함시킬 수 없다. (2014년 1월 관리위원회 결의사항 57)

출처: 1998년 10월 이사회 결의사항 86을 2000년 8월 이사회에서 수정한 결의사항 64; 2000년 11월 이사회 결의사항133; 2001년 11월 이사회 결의사항 71; 2012년 1월 관리위원회 결의사항 73; 2014년 1월 관리위원회 결의사항 57

Rotary

# 프로젝트 종류

(예, 우물, 학교 책상, 도서, X-레이 기계, 등)

## 프로젝트 국가

## 로타리클럽 혹은 지구 명

## 외국 로타리클럽 혹은 지구 명

## 기타 참여 클럽 혹은 지구 명단

본 프로젝트는 국제로타리의 로타리재단 보조금으로 실시되었다.